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국 가 초 고 성 능 컴 퓨 터 활 용 및
육 성 에 관 한 법 률 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 제 처 심 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정책의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가 추천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분야 전문가를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시행 2022.7.12., 법률 제18729호, 2022.1.11.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에 위원을 추천하는 과학기술 관련 단체를 명시하는 한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절차를 구체화하는 등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원추천 과학기술 단체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을 명시함(제5조제3항)
- 나.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 위촉위원회에 대한 해촉 기준을 마련함(제5조제4항)

다. 공동활용체계 참여대상 기관은 자원 구축 시 기획단계부터 공동활용
자원 확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계획을 수립하고, 과기정통부장관 및
국가초고성능컴퓨팅위원회는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 공동활용
체계를 반영하도록 함(제15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 협의 전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3. 23. ~ 5. 4., 5. 6. ~ 5. 20.)

3) 행정규제 : 규제없음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초고성능컴퓨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법 제7조제4항제2호”를 “법 제7조 제4항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과학기술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및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학한림원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4.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초고성능컴퓨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기관 및 단체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만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참여 대상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 참여 대상 기관”이라 한다)은 국방·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동활용 목적의 자원 확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활용 목적의 자원 확보 계획 및 예산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활용체계 참여 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 및 이를 반영한 예산 계획을 제출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

및 적합성을 선정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안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동활용체계 참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한 사유의 적절성 평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공동활용체계 참여 자원 확보 방안 등 공동활용체계 발전 전략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법 제7조 제4항 제2호 및 제 3호----- ----- ----- -----.
<u><신 설></u>	③ 법 제7조제4항제2호에서 “과 학기술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9조에 따른 국가초고성 능컴퓨팅센터
	2.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한 림원 및 「산업기술혁신촉진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학한림원
	3.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및 한국산업기 술진흥협회
	4. 「민법」 제32조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신 설>

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대상

를」에 따라 설립된 초고성능 컴퓨팅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기관 및 단체

5.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 위원을 추천할 만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할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공동활용체계의 구축·운영 등) ① -----

으로 한다.

1. ~ 6. (생략)

<신설>

<신설>

<신설>

-----.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공동활용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른 공동활용체계의 구축 및 운영 참여 대상 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동활용체계 참여 대상 기관”이라 한다)은 국방·안보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 구축하기 위한 기획단계에서부터 공동활용 목적의 자원 확보 등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반영한 예산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활용 목적의 자원 확보 계획 및 예산 배분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의2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동활용체계 참여 대상 기관으로 하

<u><신 설></u> <u>② (생 략)</u>	<u>여금 공동활용체계 참여 계획</u> <u>및 이를 반영한 예산 계획을 제</u> <u>출하도록 하고, 그 타당성 및 적</u> <u>합성을 선정평가에 반영하여야</u> <u>한다. 다만, 국방·안보 등 불가</u> <u>피한 사유로 공동활용체계 참여</u> <u>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불가피</u> <u>한 사유의 적절성 평가로 이를</u> <u>갈음할 수 있다.</u> <u>④ 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제5</u> <u>호에 따라 국가초고성능컴퓨팅</u> <u>자원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을</u> <u>심의하는 경우에는 공동활용체</u> <u>계 참여 자원 확보 방안 등 공</u> <u>동활용체계 발전 전략을 종합적</u> <u>으로 고려하여야 한다.</u> <u>⑤ (현행 제2항과 같음)</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	
연 락 처	(044) 202 - 4548